

##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운용관리계약서

###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운용관리계약서

\_\_\_\_\_ (이하 "가입자"라 합니다.)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은 아래 조항에 의거 개인퇴직계좌 운용관리계약(이하 "이 계약"이라 합니다)을 체결합니다.

#### 제1조 (계약의 목적)

가입자와 은행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(이하 "사용자"라 합니다)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이하 "법"이라 합니다)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설정하게 하는 개인퇴직계좌(이하 "이 계좌"라 합니다)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.

###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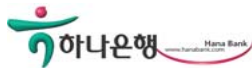
-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"근로자대표"라 함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.
  2. "운용관리기관"이라 함은 가입자와 법 제15조제1항에서 정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.
  3. "자산관리기관"이라 함은 가입자와 법 제16조제1항에서 정의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령", "시행규칙"이라 합니다)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# 제3조 (계약의 체결)

가입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확인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4조 (운용관리업무)

-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(이하 "운용관리업무"라 합니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.
1.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
  2.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·보관·통지
  3.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



4.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- 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(이하 "기록관리업무"라 합니다)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인적·물적 요건을 갖춘 자(이하 "기록관리기관"이라 합니다)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2항의 기록관리기관은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합니다.
- ④ 은행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징수합니다.

**제5조 (계약기간)**

-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.
- ② 계약기간 종료일의 1개월 전까지 가입자 또는 은행이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게 연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, 연장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

**제6조 (가입자 및 은행의 의무)**

- ① 은행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제4조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및 제15조제2항에 의해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합니다.
- ③ 가입자는 은행이 이 계약상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.

**제7조 (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)**

- ① 은행은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업무를 수행합니다.
- ② 은행이 가입자에게 제시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합니다.
- ③ 은행은 제2항의 적립금 운용방법 중 가입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별도로 제시하며 가입자는 은행이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제시된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④ 은행이 제공하는 제3항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
  2.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(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3년이 안 되

- 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취급기간)의 이익 또는 손실관련 실적
3.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
  4.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
  5.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

**제8조 (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)**

- ① 가입자는 은행이 제7조에 의해 제시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으며, 매반기 2 회 이내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을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
  2. 은행의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
  3. 기타 은행이 허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청
- ③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후 제9조에 의한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별도의 운용방법 선정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가 직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을 해당시기의 운용방법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.

**제9조 (부담금의 납입 등)**

- ①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
1. 사용자 부담금  
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
  2. 가입자 부담금  
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
-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제1항의 부담금 외에도 다른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, 가입자의 급여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**제10조 (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)**

은행은 자산관리기관의 부담금 입금통지가 완료된 후에 가입자별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 익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.

**제11조 (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·보관·통지)**

- ① 은행은 이 제도의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매년 1 회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1. 우편

- 2. 교부
- 3.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
- 4. 가입자와 은행이 합의한 방법

**제12조 (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)**

- ① 가입자는 주소, 전화번호,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(이하 "가입자정보"라 합니다)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**제13조 (개인정보의 취급 및 제공)**

- ① 은행은 이 계약의 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의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(이하 "개인정보"라 합니다)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- ② 은행은 자산관리기관,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, 가입자 급여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③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4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,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**제14조 (담보제공 및 중도인출)**

- ①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 단, 관련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가입자는 관련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③ 제2항의 중도인출시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

**제15조 (가입자에 대한 교육)**

- ① 은행은 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.
- ② 은행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

**제16조 (급여의 지급)**

- ①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지급 사유의 확인을 받아 은행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,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지시와 급여의 지급청구를 전달하기로 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(이하 "급여이전"이라 합니다.) 신청할 경우 은행은 급여이전을 위한 적립금자산의 매각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.
-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약이전을 위한 적립금자산의 매각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.

**제17조 (중도해지)**

- ① 가입자 또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(이하 "특별중도해지"라 합니다.)할 수 있습니다.
  - 1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가입자가 해지 요청시
  - 2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 - 3.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- ② 가입자 또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(이하 "일반중도해지"라 합니다.)할 수 있습니다.
  - 1. 사용자의 퇴직금제도 전환 등 부득이한 경우
  - 2.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
- ③ 일반중도해지의 경우 은행은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합니다. 단,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.

**제18조 (계약이전)**

-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(이하 "계약이전"이라 합니다)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은 계약이전 업무 처리시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계약이전수수료를 징수합니다.

**제19조 (면책)**

- 은행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
(별지1)

##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

\_\_\_\_\_ (이하 "가입자"라 합니다)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 년 월 일 체결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운용관리계약서 (이하 "계약서"라 합니다)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.

### 제1조 (기록관리업무의 위탁)

은행은 계약서 제3조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: 금융결제원

### 제2조 (수수료의 종류)

은행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운용관리수수료 : 계약서 제4조에 따른 수수료
2. 중도해지수수료 : 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계약이전수수료 : 계약서 제18조에 따른 수수료

### 제3조(수수료 납부주체 및 부과기준)

① 제2조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.

② 제1항의 수수료별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1. 운용관리수수료

가.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의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연 0.6 %를 곱하여 계산하며, 은행이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나.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산기준일에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 취득하고,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/100에 상당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며, 신탁재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관리기관의 재량에 의해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

다. '가'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 신청일,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,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,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

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인출일, 지급일, 중도해지일,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취득합니다. 이때, 수수료의 계산기간은 가입자별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.

#### 2. 중도해지수수료

가. 징구대상 : 계약체결일로부터 중도해지신청일까지 1년 미만 계약에 한함  
나. 계산기준일 : 중도해지신청일

다. 징구일 : 중도해지일

라. 수수료 : 계산기준일 전일의 적립금자산 평가액 × 1.0 %

마. 징구방법 : 가입자의 신탁재산에서 징구

#### 3. 계약이전수수료

가. 징구대상 : 계약이전신청계약

나. 징구일 : 계약이전일

다. 수수료 : 15,000 원

라. 징구방법 : 가입자의 신탁재산에서 징구

4. 제1호 내지 제2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(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)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.

5.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적립금자산에서 수수료를 징구하기 위하여 적립금자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6. 적립금자산의 매각 순서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 다만,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립금자산을 매각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4조 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

계약서 제14조 및 계약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 또한,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니다.

1. MMF

2. 수익증권(채권형)

3. 수익증권(주식편입 비율 40% 이내)

4. 정기예·적금

5. 제2호 및 제3호의 수익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

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

- 6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

**제5조 (적립금운용방법)**

은행이 계약서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제시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( )입니다.

- 1. 예금
- 2. 적금
- 3. 보험(단, 보험계약종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주식편입비율 40%이내)
- 4.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(통화안정증권 포함)
- 5. 채권(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채권 중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. 다만 자산유동화채권의 경우 공모방식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 한함.)
- 6. 외국채권(OECD회원국의 중앙정부,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위원장이 정하는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받은 것. 단,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같음함)
- 7. 수익증권(뮤추얼펀드 포함)(주식편입비율 40%이내. 단,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은 제외)
- 8. 해외수익증권(뮤추얼펀드 포함)(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된 것 중 주식편입 비율 40% 이내)
- 9.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을 말함. 다만,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에 한함)
- 10. 학자금대출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. 다만,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에 한함)
- 11. 기업어음(기업어음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 (A3-이상)에 한함)
- 12. 추가연계증권(공모로 발행되며 상환금액의 최대손실이원금의 10%이내인 경우에 한함.)

- 13. 파생결합증권(공모로 발행되며 상환금액의 최대손실이원금의 10%이내인 경우에 한함.)
- 14.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(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)
- 15. 장내 파생상품거래(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함)
- 16. 장외 파생상품거래(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함)
- 17. 발행어음(은행 및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)
- 18. 표지어음(은행 및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)

**제6조 (가입자 교육)**

- ① 계약서 제15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- 1.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 등 운용현황
  - 2. 은행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
  - 3. 가입자의 연령·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
  - 4.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.
  - 1. 설명회
  - 2. 전자우편(E-mail)
  - 3. 온라인(Web)
  - 4. 문서
  - 5. 기타 이외의 방법 ( )
- ③ 은행은 매년 1 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.
- ④ 은행은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가 입 자 주 소 :  
성 명 : ( 인 )

은 행 주 소 :  
성 명 : ( 인 )